

한국공동주택IT안전기술협회 - 주식회사 시큐에버 간

공동주택IT 망분리 설비 공급지정을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한국공동주택 IT안전기술협회와 주식회사 시큐에버(이하 ‘양 기관’)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에 공급할 공동주택 IT 망분리 설비 공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공동주택에 공급할 망분리 설비공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내용) 양 기관은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.

1. 공동주택에 설치할 공동주택IT 망분리 설비 제공

제3조 (준수 사항)

- ①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② 양 기관 간 제공되는 대상자 정보는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등에 따라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 등)

- ①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협약 유지기간 및 협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.
- ② 양 기관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본 협약을 통해 발생한 어떠한

한 정보나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5조 (협약의 효력 및 기한)

이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의 기명 날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양측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제6조 (협약내용의 준수)

양 기관은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18일



한국공동주택IT안전기술협회



주식회사 시큐에버

한국공동주택IT안전기술협회

주식회사 시큐에버

회 장 윤 창 섭

대 표 이 사 이 준 엽